

202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① 일 시: 2023년 12월 08일(금) 11시 ~ 12시
- ② 장 소: 올림픽회관 신관 1층 144호 대회의실
- ③ 출석임원: 20명(재적이사 29명 중 19명) 참석
 - 회 장 : 김돈순
 - 부 회 장 : 소영선, 조용구, 정종흠
 - 사 무 총 장 : 이성진(사회자)
 - 이 사 : 강동영, 강태영, 김성인, 김수진, 김정미, 김지선
나근주, 문성은, 박성욱, 박철성, 박태웅, 이용재
최용운, 최인수
 - 감 사 : 최희국
- ④ 상정안건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
 3. 임원 사임 보고
 4.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이전 및 회의실 관련 보고
 5. 2023년도 동계워크숍 개최의 건
 - 심의사항
 1. 규약 및 규정 개정(안)
 2. 2023년도 예산 변경(안)

2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1시)

□ 김돈순 회장 인사말씀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
3. 임원 사임 보고
4.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이전 및 회의실 관련 보고
5. 2023년도 동계워크숍 개최의 건

① 주요내용

1. 전차회의록 보고
2. 임원 선임 보고
3. 임원 사임 보고
4.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이전 및 회의실 관련 보고
5. 2023년도 동계워크숍 개최의 건

○ 주요내용

1.전차회의록

□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4시 ~ 17시
- 장 소: sk핸드볼경기장 103호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이사 30명중 24명 참석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 원안대로접수
2. 임원 선임 보고: 원안대로 접수

○ 심의사항

제1호 위촉임원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① 주요내용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명예회장	정 동 국	·(現)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부촌장 ·(前) 대한근대5종연맹 사무처장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명예회장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회장(제13대~15대)	
자문위원	이 의 재	·(現) 대한산악연맹 상임부회장 ·(前) 대한산악연맹 사무처장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부회장	
	전 영 석	·(現)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험회 사무처장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자문위원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수석부회장 ·(前)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자문위원	

제2호 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 위원회 구성 회장에게 위임 의결

① 주요내용

○ 각종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및 동호, 상조, 홍보, 권익, 여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추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회 위원장			

2.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

보고사항

- 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을 보고함

관련근거

- 2023년도 제2차 정기총회(2023.05.11.)

※ 「2호 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회 구성 회장에게 위임

-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제7장(위원회)

제26조(위원회 구성) 1. 연합회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 동호, 상조, 홍보, 권익, 여성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주요내용

- 경기단체연합회 제17대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270/2023.06.20.)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나근주	*대한당구연맹 사무처장 *경기단체연합회 이사	

※위원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 선임 완료 후 보고

3. 임원 사임 보고

보고사항

- 경기단체연합회 임원사임을 보고함
 - 사무처 퇴사로 인한 임원 사임

관련근거

-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제4장(임원) 제 11조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 한 것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장의 결위시는 직무대행을 두도록 한다.

주요내용

- 사임 임원 명단(1명)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이사	이 도 현	대한양궁협회 사무처장	퇴사 23.08.31.

4.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이전 및 회의실 관련 보고

보고사항

-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올림픽회관 이전 및 신규 회의실 및 기존 회의실 폐쇄 관련 보고

주요내용

-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이전 보고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2층 216호
- 신규 회의실
 - 올림픽회관 신관(대회의실 1, 소회의실 5)
- ※ 2023년 12월부터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예약(예정)

회의실		규모	시설물	비고
대회의실	1층 144호	36석	책상, 의자, 빔, 스크린, 회의시스템(마이크 등)	고정식
소회의실	2층 212호	20석	책상, 의자	이동식
	2층 215호		책상, 의자	이동식
	2층 217호		책상, 의자	이동식
	3층 322호		책상, 의자	이동식
	3층 325호		책상, 의자	이동식

- 올림픽컨벤션센터 및 올림픽테니스장 회의실 폐쇄
 - 올림픽컨벤션센터 및 올림픽테니스장 종목단체 이전으로 인한 회의실 폐쇄
- ※ 올림픽테니스장 2023년 11월까지 운영

5. 2023년도 동계워크숍 개최의 건

보고사항

- 2023년도 동계워크숍 개최의 건

주요내용

- 사업명: 2023년도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동계워크숍

- 일시: 2023년도 12월 21일(목) ~ 22일(금)
- 장소: 소노벨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군)
- 대상: 경기단체연합회 회원(약 300명)
- 내용: 경기단체연합회(팀빌딩, 소통의 장)/대한체육회(실무교육, 우수사례 공유대회)

②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접수

□ 심의사항

1. 규약 및 규정 개정(안)

① 제안사유

- 연합회 운영 합리성 및 자체 정비
 - * 임원 임기 조정 등 규약 정비 및 규정 정비
 - * 2023년도 규약 및 규정 개정 관련 회의(1차 2023.11.24./2차 2023.12.01)
- 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운영 내규 개정
 - * “사용료” 명칭 “관리기금” 으로 변경 및 금액 조정
 - * ‘대한체육회’ 의 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관리기금 납부 논의
 - 현재 유선으로 예약 및 승인 받고 있으며 임시사용 중

② 주요내용

가.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개정 주요내용

- <1> (제6조) 회비 납부 의무 강화 규정 개정
- <2> (제10조) 종목단체 직원에 대한 임원 정원 규정 개정
 - (제11조 6) 임원 구성 관련 자구 수정
- <3> (제11조) 임원 임기 규정 개선
 - (제11조 1) 임원 임기 2년에서 4년으로 규정 개정
- <4> (제12조) 피선거권 조건 규정 개정
 - (제12조 1) 임원선출 관련 규정 “총회” 에서 “회장선출기구” 으로 무기명 투표 대상 “출석회원” 에서 “회장선출기구의 출석회원” 으로 감사 외 선출임원의 피선거권 조건 및 무기명투표 대상 개정
 - (제12장 1-2, 1-3) 투표방법, 당선 관련 규정 신설
 - (제12장 1-4) 임원선출 단독출마 관련 규정 신설
 - (제12장 2) “회장선출기구” 관련 규정 신설

- (제12장 3) 12조 2 이동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 개정

<5> (제14조) 자구 정비

- (제14조 4) “진술” 에서 “개진” 으로 자구 정비

<6> (제33조) 회비 관련 규정 정비

- (제33조 2) 신설된 회비규정 관련 규약의 근거 규정 정비

<7> (제36조) 자구 정비

- (제36조 2) 신설된 회비규정 관련 규약의 근거 규정 정비

<8> (부칙 및 경과조치) 부칙 정비 및 규약 개정에 관련 연결 경과 조치사항 명기

나.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제13조 및 별표 1·2호) 상조비 지급 대상 관련 정비

- (제13조 4) 노무지원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다. 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운영 내규 개정(안) 주요내용

<1> (제3조) “사용료” 용어 정리

- (제3조 5) “사용료” 에서 “관리기금” 으로 명칭 변경

<2> (제4조) 회의실 사용자 관련 규정 개정

- (②에 1) 회의실 사용자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명기

- (②에 3) 사용자 구분 “비회원단체” 추가

<3> (제6조) 회의실 예약 관련 규정 정비

- (제6조 1항) 회의실 신청 방법 연합회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으로 규정 정비

- (제6조 2항) 신청된 회의실 예약 관련 승인 및 게시 규정 정비

<4> (제7조) 사용기관 및 “사용료” 용어 정리

- (제7조 1항) 회의실 사용 관련 외부기관 용어삭제

- (제7조 2항~5항) “사용료” 에서 “관리기금” 으로 용어 정리

- (제7조 4항) 관리기금 면제 규정 정비

<5> (제12조) “사용료” 용어 정리

<6> (별표 1호) “사용료” 용어 정리 및 신설·폐쇄 회의실 정리 및 금액 변경

- (별표 1호) 올림픽테니스장·올림픽컨벤션센터 회의실 폐쇄 관련 삭제

- (별표 1호)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 6개소 신설 관련 등록

- (별표 2호) “사용료” 에서 “관리기금” 으로 용어 정리, 금액·대상 규정 개정

□ 신·구 대조표

가.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6조(가입)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가입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각종목단체에서 채용한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당연히 가입이 된다.	제6조(가입)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가입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각종목단체에서 채용한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당연히 가입이 된다. 단, 탈퇴 후 재가입의	■ 회비 납부 의무 강화

<p>제4장임원 제10조1~5 “생략” 6. <u>임원 구성 시</u>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처 직원 3명~5명은 전체 임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p>	<p>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임원 제10조1~5 “생략” 6. <u>전체 임원 중</u> 회원종목단체의 <u>사무처장을 제외한</u> 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 규정 정비</p>
<p>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 한 것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4. 선출임원의 결원 시 총회에서 보선한다.</p>	<p>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u>4년</u>으로 하되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한 것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4. 선출임원의 결원 시 총회에서 보선한다.</p>	<p>■ 체육단체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 효율적 단체 운영을 위한 임기 변경</p>
<p>제12조(선출방법)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u>회장은 종목처장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u> <u>감사는 종목처장과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u> 단, 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u>출석회원</u>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u>단독 출마의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추대를 할 수 있다.</u></p>	<p>제12조(선출방법)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u>회장선출기구</u>에서 선출하되, <u>회장은 종목처장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u> <u>감사는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u> 단, 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u>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건 규정 개정</p>
<p><u>1-2-1-4. “신설”</u> 2. 임원 선출을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u>3. “신설”</u></p>	<p><u>1-2.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u>1-3.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u>1-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2.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회원 종목별 6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임원 선출을 위하여 <u>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제14조(임원의 의무) 1~3 생략 4.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4조(임원의 의무) 1~3 생략 4.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u>개선</u>할 수 있다.</p>	<p>■ 자구수정</p>
<p>제32조(결정) 제명 및 복권은 이사회에서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32조(결정) 제명 및 복권은 이사회에서 재적 <u>이사</u>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 자구수정</p>
<p>제33조(재정) 본 연합회의 세입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 1. 기금 2. 월회비 3. 특별회비 4. 사업수익금</p>	<p>제33조(재정) 본 연합회의 세입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 1. 기금 2. 월회비(<u>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u>) 3. 특별회비</p>	

<p>5. 찬조금 6. 기타수입</p>	<p>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p>	
<p>제36조(사무처) 1. 연합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한다. 2. 사무처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과실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5. 사무처의 복무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규정 및 <u>위임 전결 내규</u>를 따르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p>	<p>제36조(사무처) 1. 연합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한다. 2. 사무처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과실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5. 사무처의 복무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규정 및 <u>내규</u>를 따르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p>	<p>■ 규정 정비</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차 개정 2003.08.31. (총회) - 제 4차 개정 2005.11.25. (총회) - 제 5차 개정 2009.02.26. (총회) - 제 6차 개정 2010.02.25. (총회) - 제 7차 개정 2011.03.17. (총회) - 제 8차 개정 2013.02.26. (총회) - 제 9차 개정 2015.03.05. (총회) - 제 10차 개정 2017.03.10. (총회) - 제 11차 개정 2017.04.04. (1차 정기이사회) - 제 12차 개정 2018.03.07. (총회) - 제 13차 개정 2019.05.30. (임시총회) - 제 14차 개정 2019.12.20. (임시총회) - 제 15차 개정 2020.05.28. (총회) - 제 16차 개정 2021.05.13. (총회) - 제 17차 개정 2022.04.28. (총회)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차 개정 2003.08.31. (총회) - 제 4차 개정 2005.11.25. (총회) - 제 5차 개정 2009.02.26. (총회) - 제 6차 개정 2010.02.25. (총회) - 제 7차 개정 2011.03.17. (총회) - 제 8차 개정 2013.02.26. (총회) - 제 9차 개정 2015.03.05. (총회) - 제 10차 개정 2017.03.10. (총회) - 제 11차 개정 2017.04.04. (1차 정기이사회) - 제 11차 개정 2018.03.07. (총회) - 제 12차 개정 2019.05.30. (임시총회) - 제 13차 개정 2019.12.20. (임시총회) - 제 14차 개정 2020.05.28. (총회) - 제 15차 개정 2021.05.13. (총회) - 제 16차 개정 2022.04.28. (총회) <p style="text-align: center;">< 경과조치 ></p> <p><u>제11조(임기)의 개정된 규정은 차기(제18대) 선출임원부터 적용한다</u></p>	<p>■ 자체 정비</p>

나.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3조(상조비의 구분) 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전별금</p>	<p>제13조(상조비의 구분) 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전별금 <u>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u> 4. 노무지원금<이사회에서 정함으로 변경></p>	<p>■ 신설</p>

나. 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운영 내규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 4. 생략 5.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 4. 생략 5. “관리기금”은 회의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금으로, 이에 대한 기금은 회의실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p>	<p>■ 명칭 개정</p>
<p>제4조(용도 및 사용자) ① 1~3 “생략” ② 1. 연합회 임직원 2. “생략” 3. 기타 체육단체 외부단체 등 제1항의 사용용도로 회의실 관리부 서장의 승인을 받은자</p>	<p>제4조(용도 및 사용자) ① 1~3 “생략” ② 1. 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 2. “생략” 3. 기타 비회원단체 및 체육단체 외부단체 등 제1항의 사용용도로 회의실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자</p>	<p>■ 회의실 사용자 관련 규정 개정</p>
<p>제6조(사용절차)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 또는 FAX, E-mail 등으로 회의실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실 관리부서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목적, 인원 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실 사용 현황에 명시하여 회의실 대관 게시판에 공지하며, 사용자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실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실 이용 안내문을 비치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④ 회의실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 규모,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의실 관리부서와 사용자 간 조정하며, 국제회의, 연합회 행사 등의 행사를 우선하여 배정한다.</p>	<p>제6조(사용절차)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www.ksau.or.kr)의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 ② 회의실 관리부서는 회의실 예약시스템의 회의실 예약을 사용목적, 인원 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통해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실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실 이용 안내문을 비치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④ 회의실 사용신청일이 4일 이상인 경우 신청순위, 규모,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의실 관리부서와 사용자 간 조정하며,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 국제회의, 연합회 행사 등의 행사를 우선하여 배정한다.</p>	<p>■ 회의실 대관 방법 개정</p>
<p>제7조(사용료) ① 외부기관의 회의실 사용 시의 사용료는 별표2의 정한 바와 같다. ② 회의실 관리부서는 사용신청서 및 실질적 사용시간에 의거하여, 월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사용자는 청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 임직원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별표2에 따른 사용료는 회의실 비품 수선관리 및 관리를 위한 인</p>	<p>제7조(관리기금) ① 외부기관의 회의실 사용 시의 관리기금은 별표2의 정한 바와 같다. ② 회의실 관리부서는 사용신청서 및 실질적 사용시간에 의거하여, 월별 기준으로 관리기금을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사용자는 관리기금을 납부 후 회의실 사용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 회의·사업·행사로 임직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 명칭 개정</p>

건비 등으로 사용 할수 있다.

⑤ 별표2에 따른 관리기금 회의실 비품 수선관리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 할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 “생략” 1. “생략”
 2. 사용료를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8. “생략”

제12조(사용제한) “생략” 1. “생략”
 2. 관리기금을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8. “생략”

■ 명칭 개정

【별표 1호】

〈 회의실 현황 〉

연번	위치	회의실명	전용면적 (m ²)	규모(정원)			시설물 (부대시설 등)
				회의형1 (의자)	회의형2 (의자,책상)	강의형 (의자,책상)	
1	올림픽테니스장(2층)	대회의실	74.45	30석	30석	30석	
2	올림픽컨벤션센터(1층)	소회의실	13.21	10석	10석	10석	
3	핸드볼경기장 103호	대회의실	78.1	26석	26석	26석	
4							

【별표 1호】

〈 회의실 현황 〉

연번	위치	회의실명	전용면적 (m ²)	규모(정원)			시설물 (부대시설 등)
				회의형1 (의자)	회의형2 (의자,책상)	강의형 (의자,책상)	
1	올림픽테니스장(2층)	중회의실	74.45	30석	30석	30석	빔, 단상, 화이트보드
2	올림픽컨벤션센터(4층)	소회의실	13.21	10석	10석	10석	빔, tv, pc, 프린터
1	핸드볼경기장 103호	중회의실	78.1	26석	26석	26석	빔, 단상
2	에스엠빌딩관리관	1층 144호	188.58	36석	36석	36석	회의시스템
3		2층 217호	45.36	20석	20석	20석	
4		2층 212호	53.36	20석	20석	20석	
5		2층 215호	53.36	20석	20석	20석	
6		3층 322호	54.95	20석	20석	20석	
7		3층 325호	53.37	20석	20석	20석	

■ 명칭 개정
 ■ 회의실 폐쇄 및 시설로 인한 개정

【별표 2호】

〈 회의실 사용료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위치	회의실명	전용면적(m ²)	기본 사용료 (4시간)	일 사용료 (8시간)	대관방법	비고
1	올림픽 테니스장(2층)	대회의실	74.45	40,000	6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외부단체
				10,000	2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회원종목단체
2	올림픽 컨벤션센터(1	소회의실	13.21	-	-	<u>현장예약 (화이트 보드)</u>	외부단체

【별표 2호】

〈 회의실 관리 기금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위치	회의실명	전용면적(m ²)	기본 관리 기금(4시간)	일 관리 기금(8시간)	대관방법	대상
1	올림픽 테니스장(2층)	대회의실	74.45	40,000	6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외부단체
				10,000	2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회원종목단체
1	핸드볼경기장 103호	중회의실	78.1	60,000	10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기본료
				30,000	50,000	<u>연합회 홈페이지</u>	경기도체육연합회 회원
2	올림픽컨벤션센터(4층)	소회의실	13.21	-	-	<u>현장예약 (화이트 보드)</u>	외부단체

■ 명칭 개정
 ■ 회의실 폐쇄 및 시설로 인한 개정

층)			-	-	<u>현장예약</u> (화이트 보드)	회원중목단체
3	핸드볼경기장 103호	대회의실 78.1	40,000	60,000	<u>연합회</u> <u>홈페이지</u>	외부단체
			10,000	20,000	<u>연합회</u> <u>홈페이지</u>	회원중목단체

- * 사용료 징수 : 회의실 손·망실, 유지 비용 집행
- * 공공기관 회의실 대관 기본사용료 평균 410원/1시간·면적(m2)
- * 공공기관 회의실 대관 일일사용료 평균 360원/1시간·면적(m2)
- * 이에, 기본사용료 및 추가 시간당 사용료는 67원/1시간·면적(m2), 일일사용료는 50원/1시간·면적(m2)으로 책정하였으며, 향후 부대시설 추가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	<u>현장예약</u> (화이트 보드)	회원중목단체
2	올림픽 1층 144호	대회의실	188.58	150,000	280,000		기본료
				70,000	130,000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3	2층 217호		45.36				
4	회관 2층 212호		53.36	40,000	80,000		기본료
5	2층 215호	소회의실	53.36				
6	3층 322호		54.95	20,000	40,000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7	3층 325호		53.37				

- * 관리 기금 : 회의실 손·망실, 유지 비용 및 인건비 집행
- * 회의실 관리기금은 공공기관 회의실 사용료의 기약 50%인 기본사용료 200원/1시간·면적(m2), 일일사용료 180원/1시간·면적(m2)이며 경기단체연합회는 추가로 약 50% 할인된 기본사용료 100원/1시간·면적(m2), 일일사용료 90원/1시간·면적(m2)으로 책정하였고, 향후 부대시설 추가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공공기관 회의실 대관 기본사용료 평균 410원/1시간·면적(m2)
* 공공기관 회의실 대관 일일사용료 평균 360원/1시간·면적(m2)

【별지 제3호】

회의실 이용 안내문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운영 및 관리 내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합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소정의 양식 또는 공문에 따라 회의실 사용신청서를 회의실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승인 시 약속한 제반사항을 지켜서야 합니다.
 - 2) 시설 및 용품의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승인없이 출입하거나 회의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 통제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본 내규에 고지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장

【별지 제1호】

회의실 이용 안내문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 운영 및 관리 내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합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소정의 양식 또는 공문에 따라 회의실 사용신청서를 회의실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승인 시 약속한 제반사항을 지켜서야 합니다.
 - 2) 시설 및 용품의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승인없이 출입하거나 회의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 통제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본 내규에 고지된 관리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장

③ 참석자 주요발언:

- ○ ○ ○ 이사: 임원 선출의 사무총장의 경우 대한체육회 등 여러단체의 경우를 봤을 때 지명 혹은 러닝메이트로 하는게 좋을 것
- ○ ○ ○ 이사: 물리적으로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이 해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임원중 부회장에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을 최소 1명이라도 선임을 하여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 ○ 이사: 국생체 시절 사무처장은 임원으로 되어있었으나 문체부에서 직원과 임원중 선택을 하라고 해서 직원 신분을 택하게 되었다. 사무처장도 직원으로 봐야한다.
- ○ ○ ○ 이사: 경기단체연합회 정관인 규약 개정 시 직원의 경우에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으로 명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논의결론: 원안 회장에게 위임가결 하되 규정심의위원장과 논의 후 개정 결과 차기이사회 보고

2. 2023년 예산 변경(안)

① 제안사유

- 동계워크숍 대한체육회 직접집행 및 사무처 이전관련 예산 변경
- 예산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

② 주요내용

- 2023년도 예산 변경(안) 주요 내용

<수입>	1. 행사지원/특별찬조/체육회(▽ 60,000,000): 예산 6천만원 대비 0원으로 변경
<지출>	1. 사업비/연수회/워크숍(▽ 30,000,000): 예산 8천만원 대비 5천만원으로 변경 - 예산 대신 대한체육회 직접 집행(임차료 3,500만원/일반수용비 1,500만원 등)
	2. 경상비/운영비/선물구입비(▽ 1,000,000): 예산 2백만원 대비 1백만원으로 변경
	3. 경상비/운영비/사무처이전(△ 10,839,000): 예산 0원 대비 1,083.9만원으로 변경
	4. 경상비/운영비/환경개선(△ 10,000,000): 예산 0원 대비 1,000만원으로 변경
	5. 기타/예비비(▽ 9,839,000): 예산 1천만원 대비 16.1만원으로 변경 - 올림픽회관 신관 입주 관련 인테리어 및 가구 구입

- 2023년도 예산변경(안)

구분	관	항	23예산(a)	변경안(b)	증감(c=b-a)
수입	전기이월	이월	143,600,430	143,600,430	0
	사업수입	회비	144,000,000	144,000,000	0
		대관료	10,000,000	10,000,000	0
	보조금	행정, 인건비(기금)	78,228,840	78,228,840	0
		회의실 운영(기금)	25,200,000	25,200,000	0
	행사지원	특별찬조(체육회)	60,000,000	0	-60,000,000
		특별찬조(종목단체)	20,000,000	20,000,000	0
	잡수입	이자	150,000	150,000	0
	계	481,179,270	421,179,270	-60,000,000	
지출	경상비	운영비	48,354,400	68,193,400	19,839,000
		인건비	104,849,858	104,849,858	0
	상조비	상조비	31,100,000	31,100,000	0
	회의비	회의비	8,000,000	8,000,000	0
	사업비	연수회(워크숍)	80,000,000	50,000,000	-30,000,000
		소통과 화합	12,000,000	12,000,000	0
		업무 추진비	15,000,000	15,000,000	0
	기타	예비비	10,000,000	161,000	-9,839,000
		차기이월	171,875,012	131,875,012	-40,000,000
		계	481,179,270	421,179,270	-60,000,000

③ 참석자 주요발언:

○ ○ ○ ○ 이사: 경기단체연합회 2023년도 동계워크숍 참여자만 기념품을 받게 되면 사업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경기단체연합회 회원에게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④ 논의결론: 원안에서 동계워크숍 및 환경개선 예산 증액 가결

□ 기타사항

① 주요내용

○ 경기단체연합회에서 회원종목단체 직원 대상 체육유공자 추천 대한체육회와 협의

(폐회선언: 12시 00분)

3 참석자 서명부

- 재적이사 29명 중 19명
- 감사 1명

2023년도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제3차 정기이사회 서명부					
연번	구분	성명	단체/종목	직위	서명
1	회장	김돈순	목상	사무처장	
2	부회장 (6)	정해천	탁구	사무처장	
3		소영선	댄스스포츠	사무처장	
4		조용구	배구	사무처장	
5		한세희	수구	사무처장	
6		박신홍	하키	사무처장	
7		정종훈	계이트볼	사무처장	
8	사무총장	이성진	철인 3종	사무처장	
9	이사 (21)	강동영	유도	사무처장	
10		강태영	근대 5종	사무처장	
11		김성민	근대 5종	차장	
12		김수진	조정	부장	
13		김정미	아이스하키	부장	
14		김지선	요트	차장	
15		김태주	소프트테니스	사무처장	
16		나근주	당구	사무처장	
17		문성은	농구	사무처장	

연번	구분	성명	단체/종목	직위	서명	
18	이사 (21)	박성욱	태권도	사무처장		
19		박철성	바이애슬론	사무처장		
20		박태웅	빙상	차장		
21		오주욱	보디빌딩	사무국장		
22		이강민	불꽃레이	사무처장		
23		이경명	루지	사무처장		
24		이경호	파크골프	사무처장		
25		이윤재	사격	사무처장		
26		정규오	핸드볼	사무처장		
27		최용운	합기도	사무처장		
28		최인수	스쿼시	사무처장		
29		한우구	베드민턴	사무처장		
30		감사(2)	최희국	복싱	사무처장	
31			이새롬	우슈	과장	
32	명예회장	정동국	전력선수부	부총장		
33	자문위원(2)	이의재	산악	상임부회장		
34		전영석	수상스키	사무처장		
35						
36						

4

이사회 사진

